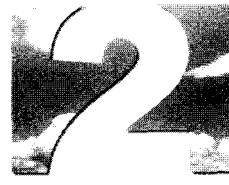


유기축산물의

Codex 대응 방안



유덕기 교수
(동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1세기의 농업과제는 환경농업을 위한 Recycling 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본다.

자연의 생명력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이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할 수 있는 자연적 생태적 산업시스템의 연구는 인류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본다.

1990년 이후 국내·외적으로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유기농산물 및 식품지침(안)이 결의되었으며, 유기축산물의 국제기준 또한 이미 Codex 총회에서 논의된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현실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함께 유기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의 농축산물 생산 및 식품시장에 또 하나의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유기농축산물 및 유기식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증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및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Codex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1. 유기축산물의 Codex 지침(안)

유기농업은 최초 1969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유럽의 유기농업단체들이 모여 1972년 국제유기농업연맹(IFOAM)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 연맹은 유기농산물 연구와 기술보급 그리고 품질인증 등을 수행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 보급되어 왔다. FAO와 WHO의 Codex의 기준을 보면 IFOAM의 기준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농업선진국이면서 농산물 수출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국제기준을 작성하는 배경에는 순환농업을 통한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EU는 물론 북미, 호주 등의 유기농업단체들이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의 국제시장에 진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의 유기농업 육성정책의 배경을 보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기획_특집]

»» 국내 유기축산 도입 깨扃검

1970년까지도 유럽은 주요 농산물의 수입국으로서 당시 유럽공동체의 대부분 국가들의 농업정책 목표는 농산물 자급률 100% 달성을 두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농산물 가격지지제도와 농업소득 향상 등을 위한 많은 경제·사회적 보조정책을 실행하여 왔었다.

이러한 농업보호 및 지지정책 결과 '8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 과잉생산 문제와 함께 심각한 농업재정적자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업생태계 파괴란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졌다.

이와 같은 유럽농업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도입된 정책이 친환경 및 유기농업 육성정책과 활성화 방안이었으며 이는 UR와 WTO의 농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되어왔던 것이다.

유럽의 유기농업정책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공급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농업 노동력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유럽농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농업선진국 및 수출국들은 첨단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농업 부문별로 전문화, 조직화되어 있으며 풍부한 농지와 초지, 전작 중심의 다모작과 윤작 및 휴경 그리고 복합영농이 가능한 유럽형 순환농업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유기농 생산기준인 IFOAM의 규정을 근간으로 Codex규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국제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Codex식품표시분과위원회의 유기축산물 부문별 논의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Codex 유기축산물의 주요 지침(안)의 핵심을 보면:

- (1) 생태계 보존을 위한 순환축산
 - (2) 가축복지의 보장
 - (3) 지역특성과 토지와 연계된 유기축산
 - (4) 축군 및 개체관리를 통한 신뢰성 보장
 - (5) 유기축산물의 계열화
-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의 Codex지침(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사항을 예상할 수 있다.

유기축산물의 Codex 대응 방안

<표 1> Codex의 주요 유기축산물 지침(안)

		내 용	비 고
1.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은 유기농업의 일부분으로서 유기농업에 기여 • 가축생산은 토양과 연계하여 자유방목 사육관리 • 지역 환경영향을 고려한 가축밀도 유지(사료생산, 가축건강, 환경영향 등) • 가축복지 보장 		사육단계, 환경오염, 가축 복지 저해 우려시에 제한적 공간사육 가능
2. 가축의 출처 및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과 계통의 선택은 유기축산의 원칙과 일치. • 가축은 유기적 방식으로 사육된 축군에서 확보하며 타 축군에서 확보할 경우 일정 전환기간을 준수. <p>* 전환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육우: 6~12개월(수명의 3/4를 유기적으로 사육) - 젖소: 12개월(9개월간은 80%, 이후 3개월간은 100% 유기사료 급여조건) - 돼지: 6개월(이유직후의 25% 또는 45일령 조건) - 닭: 계육용 10주(<7일령), 산란용 6주(<18주령조건) 		높은 폐사율, 품종전환, 경영전문화, 유기축산전환 등 의 경우 공식인증기관에서 전환기간을 일부 완화 가능.
3. 영양 및 사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사료 100% 공급원칙 • 유기사료 부족시 사료간물기준 반추동물은 85% 이상, 비반추동물은 80% 이상 유기사료 급여 • 보조사료는 자연/천연산 등 허용품목만 급여 • 항생제, 효소제, 성장촉진제 불허용 • 예방 및 치료제 사용허용 • 가축건강을 위한 괘적환경과 양질의 급수/사료급여 • 인위적 가축학대 및 가축부위의 일부제거 금지 • 자연교배권장, 인공수정가능(유전학적 번식기법금지) • 수송/도축시에 가축의 스트레스와 고통 최소화 • 가축의 생물적 행동적 욕구만족과 토양악화방지 위한 가축밀도 유지 및 공간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치료제 사용시 휴약기간은 법적 요구기간의 2배를 요구. • 2005년 이후 유기축산의 항생제 불사용. • 가축건강/복지 조건을 위하여 가축부위 일부제거 예외적 인정.
4. 분뇨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분뇨처리 · 시용방법 및 시설 확보 • 분뇨성분의 적절한 재이용방법 활용 		
5. 표시 및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수송, 출하, 도축, 가공 등의 모든 과정의 표시 의무 • 축종별 축군 및 개체관리의무(번식, 출하, 예방, 건강 관리처치 및 의약품공급, 사료급여량/사료공급원, 경영내 가축이동, 운송, 판매 등) 		

[기획-특집] >>> 국내 유기축산 도입 쟈켓

- (1) 가축사육의 토지 연계성 문제
- (2) 가축사육의 전환기간 설정 문제
- (3) 유기사료의 급여비율 문제
- (4) 유기축산의 사육밀도 문제
- (5) 사육가축의 건강관리 문제
- (6) 유기축산물 표시 및 식별 문제 등이다.

2. 유기축산의 국내 도입여건과 문제점

Codex의 쟁점에 입각한 유기축산의 국내 도입여건은 극히 빈약하고 미비한 실정에 있으며 유기축산물 생산에 대한 관리제도와 법적 근거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 있다. 특히,

- Codex의 국제기준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인증제는 국내에 재래종 중심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 유기축산 도입을 위한 정부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Codex 유기축산물 기준 제정과 연계하여 국내 유기축산물 품질인증제 기준과 유기축산농 모델 개발 및 유기사료 생산 그리고 유기축산물 유통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Codex의 유기축산물 국제기준 제정과 축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라 유기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의 유기축산물 생산기반과 시설 및 유통구조의 취약성으로 유기축산물 생산비의 증가와 유통비용 부담으로 국내 소비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구밀도가 높은 국내 여건에서 가축사육의 토지연계성 조건을 단기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우며 벗꽃 중심의 사육형태에서 양질의 유기사료자급률 향상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순환체계 구축 미비, 그리고 고비용 분뇨처리와 시설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제기와 효율적 유기농업의 활용이 빈약하며,
- 가축사육 단계별 전문화 및 분업화가 되어있지 않아 축산농가간의 유기적 조직화가 어려우며 사육단계별 전문사육기술 수용 및 사육환경 조성이 취약하다.

유기축산물의 Codex 대응 방안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료공급의 95%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기축산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급사료 생산기반(초지기준: 육우 1ha/두, 젖소 0.5ha/두 요구됨)이 극히 취약함.

이와 같은 국내의 유기축산물 도입 및 생산 여건이 열악한 현실에서 Codex의 엄격하고 구체적인 국제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방치한다면 성장 잠재력이 큰 국내 유기축산물 시장은 수입축산물에 의해 잠식되어갈 것이며 나아가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Codex지침(안)에 대하여 국내 생산 및 유통기술 등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Codex에 대한 대응방안

Codex의 유기축산물 지침(안)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에서 논의 검토된바 있는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논의된 Codex 국제기준을 수도작 중심의 소규모 분산된 無畜經營으로 특징되어 있는 아시아 농업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실의 국내 유기농업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내 유기농업 생산기반을 최소한 보호하고 육성하며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공급을 위해서는 수출국의 유기농산물 산지의 현장검사와 객관적이고 엄격한 통관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은 강한 지역성과 연계성을 가진 산업으로 특징되어 진다.

따라서 Codex 총회에서는 각국의 기후적 조건과 경제·사회적 여건의 특성을 고려한 유기식품기준제정과 이를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업의 연계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복합산업(AgroFood Complex)의 육성을 위한 조직적 기술진보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생물학적 물리적 기술진보중심에서 조직적 기술진보로 전환하여 농업전방산업과 농업산업 그리고 농업후방산업의 계열화와 수평적 조직화를 통하여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과의 유기체적 특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적 기술진보를 위한 유기축산의 전문화가 전제될 경우 순환농업으로서의 유기농

[기획_특집]

>>> 국내 유기축산 도입 깨점검

<표 2> Codex지침(안)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 가축사육을 위한 토지확보문제	◆ 인구밀도가 높은 국내 경우는 방목용 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기사료를 구입하여 계류사육하는 경우 도 인정
◆ 가축사육기간의 전환기간 설정 • 유기적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 일정 전환기간 적용 • 전환기간을 농장과 가축을 연계하여 적용	◆ 가축사육의 전환기간 조정 필요 • 쇠고기: 12개월 → 6개월 • 우유: 12개월 → 8개월 • 돼지고기: 6개월 → 4개월 • 유기사료를 구입, 급여하기 때문에 유기 농장에 연계전환은 불필요.
◆ 유기사료의 사용비율 • 유기사료는 원칙적으로 100% 사용 • 자급유기사료는 반추가축인 경우 85%, 비반추가축인 경우 80% 이상 급여	◆ 국내는 배합사료원료의 96%를 수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유기사료의 사용비율을 완화 • 반추가축사료: 60~85% • 비 반추가축사료: 55~80% 수준 * 유기사료 사용비율이 낮을수록 국내조건에 유리함.
◆ 보조사료의 사용범위	◆ 보조사료의 사용범위 확대 • 추가할 보조사료: 아미노산, 규산염, 약초부신물 등
◆ 성장·생산촉진제의 사용규제	◆ 규제대상 성장·생산촉진제에 비유촉진제/물질을 추가(BST)
◆ 유기축산물 표시 및 식별	◆ 일반식품이 유기축산식품으로 둔갑유통 또는 교역되는 것을 방지 • 유기축산물의 생산자, 급여사료명, 투약 등 개체관리기록을 명문화(유기축산 등급 및 등록제)

업의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Codex는 예로,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윤작, 두파작물 재배, 녹비/심근작물 재배를 전체로 한 유기농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기질 비료는 유기 농산물의 질산염 과다집적을 우려하여 퇴비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옥도 증진방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아시아국들은 Codex 논의에서 최소한 유예기간 및 경과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기농법은 지역의 자연적, 경제 사회적 조건 그리고 기술수준 등의 특성에 따라 언제든지 개선되고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지역의 특성별로 모델화·표준화하여 권장

『기획 도록』

유기축산물의 Codex 대응 방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기축산물의 Codex기준을 보면 더욱이 유기농업과의 연계사육, 사육공간 문제와 토지연계성 문제, 유기사료 공급문제, 전환기간 준수문제 등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유기축산물의 국제기준은 지역의 환경오염 정도와 자연·기후적 조건 그리고 농업생태적 조건과 생태적 산업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환경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순환농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져야 한다.

만약 유기농법에 의한 유기사료가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엄격한 유기축산물 기준은 무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유기축산물은 축종별 생산/경영방법과 시설, 사육규모 및·기술 등에 따른 온실효과 가스발생 기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국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작형태, 작물재배 그리고 축종별 사육규모 및 형태별 사료급여량과 질, 분뇨처리시설과 방법, 이들 지역의 기후조건 등에 따라 온실효과가스 발생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기농업은 이러한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확실한 농법이다.

그러나 유기농법이 유해환경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유해가스를 방출하고 있는지를 파악 분석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지역적 기후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엄격하고 일방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Codex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다.

따라서 지역적 기후조건과 농법, 집약도, 생산규모, 생산환경, 기술의 연계성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환경영유해가스 배출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농·축산물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근본적으로 시급히 요구된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접근방법과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유해가스 배출기준과 이의 저감방안이 제시될 경우 선진국의 과잉농산물 생산을 억제하고 개도국과 후진국의 농업잠재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다 진정한 유기농업으로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유기농업은 농업생태계 및 환경보호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⑤